

원격훈련 훈련생 본인인증 강화 관련 세부 기준안

<공단 훈련품질향상센터, '18. 4. 9.>

I 고시 개정사항

- (배경) 개별 온라인 학습으로 이뤄지는 원격훈련의 특성을 악용하여 조직적인 대리수강 부정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훈련생 본인인증을 강화토록 고시 개정
-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22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6조 및 [별표 1] 원격훈련의 인정요건 <훈련생모듈>
 - (기존) 훈련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 (개정) 휴대폰을 활용한 훈련생 신분확인(1일 1회)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 적용시점 : '18. 4. 30 이후 인정 신청하는 원격훈련과정부터

II 본인인증 강화 적용 기준(안)

1. (대상사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의 과정 인정요건을 적용받는 훈련 사업
 - (사업) 사업주, 컨소시엄, 근로자개인, 실업자훈련
 - (주체) 자체, 위탁, 자체+위탁
2. 휴대폰 본인 인증 기준
 - (LMS 기능설정 원칙) 훈련기관의 LMS 회원정보와 본인인증 서비스 업체를 통한 휴대폰 본인인증 정보가 상호 일치할 시에만 인증되도록 LMS 기능을 구현하여, 훈련생 본인검증 철저
 - 본인 인증이 되지 않은 경우, 진도 및 평가 진행할 수 없도록 조치

- (본인인증 수단) '휴대폰 인증'은 필수적으로 구현, 별도로 '아이핀, 공인인증서'를 종전과 같이 대안으로 추가 가능
 - 그 외 이메일, 신용카드 등 다른 인증 수단은 불가

- 공공 아이핀은 '18년 6월까지만 신규 발급 가능 및 1년간 이용 가능하고, '18년 7월부터는 민간 아이핀 사용
- 공인인증서는 범용어 어너어도 ~~은행/신용카드/보험용 공인인증서~~ 가능(삭제)
- '19년 M-OPT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 상기 수단으로 본인인증

- (인증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내외국인, 휴대전화번호
 - * 통상적인 본인인증 서비스 업체의 확인 항목을 활용

- (횟수) '훈련생'별로 1일 1회 인증

- 1일에 진도 및 평가의 종류, 로그인 횟수, 훈련과정 수에 관계없이 훈련생 기준으로 1회 인증
- 하루 동안에는 이미 인증 후 다른 학습기기(PC, 스마트기기)로 로그인시 추가 인증 불필요
- 로그인하여 계속 학습하다가 다른 날짜가 된 경우 재 인증 불필요

- (인증시점) 로그인시, 강의실 입장시, 최초로 과정의 학습할 내용 클릭시 훈련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증 시점 설정
 - 단순 확인을 위한 사이트 로그인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인증 부담 완화

- (인증대상 훈련과정) '18. 4. 30일 이후 인정받은 훈련과정을 학습하는 경우 인증 실시
 - 수료 이후 무료 복습기간의 과정은 제외
 - LMS 구현상 '18.4.30일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과정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일괄적으로 1일 1회 인증 적용 가능

3. 휴대폰 본인인증 결과의 관리

- 휴대폰 본인인증 결과를 LMS에 필수적으로 기록 관리
- 관리 방법 : LMS 관리자 모듈에 로그 기록 및 **화면구현**
 - **훈련생별 인증이력(날짜, 시간) 누적관리**

※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예외자의 처리

○ 예외자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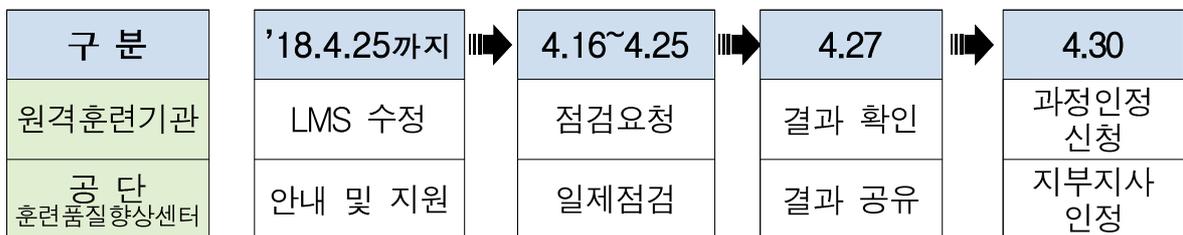
- 본인명의로 휴대폰 미 보유자 (가족명의로, 법인명의로, 휴대폰 없음)
 - 본인인증정보와 고용보험 DB정보 상이자 (두음법칙, 외국인 등)
 - 해외근무자(주재원 등) (해외통신사, 한국 휴대폰 미보유)
- * 객관적으로 사정에 의하며, 단순히 불편한 경우는 미 허용

○ 조치 방법 : 아이핀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1일 1회 인증

구분	주요 유형	비 고
1	법인명의 휴대폰 사용	* 법인명의 휴대폰의 본인인증 서비스 통신사 확인 (3개사 모두 가능)
2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 (가족 등)	
3	휴대폰 없음	
4	외국 주재원, 해외 출장	
5	개인정보 상이자 - 개명으로 인한 성명 불일치 - 두음법칙으로 인한 성명 불일치 - 외국인 성명 불일치	- 고용보험 DB정보 일치를 위해 수정 신청

III **과정인정 요건의 확인 등 행정사항**

◆ 본부(훈련품질향상센터) 일괄점검 추진일정



☞ '18. 4. 30일 고시개정 적용을 위하여, 4월은 일제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과정인정이 필요한 기관이 수시로 접수하여 인정요건 확인

1. 준비 완료 훈련기관의 LMS 점검 요청

□ 신청방법

- 일괄점검 신청기간 내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송부
 - 신청기간 : 2018. 4. 16(월). ~ 4. 25(수)
 - 제출서류 : ① LMS 점검 신청서[별첨1], ②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계약서
 - 점검주체 : 공단 본부 훈련품질향상센터
 - 이메일 : s.e.kim@hrdkorea.or.kr (김석은 대리)

□ 테스트 계정 생성방법

- (훈련생 모듈) '본인인증 팝업창'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접속 가능하도록 테스트 계정 생성
- (관리자 모듈) 인증이력(날짜, 시간) 누적관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 계정 생성
 - 2018년 4월말까지 수시로 접속 가능하도록 세팅
 - 이후 모니터링을 위해 테스트 계정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이상여부를 확인할 계획임

2. 휴대폰 인증의 LMS 점검 사항

- 여러 날에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팝업창이 열리는지 확인
- 적정한 본인인증 수단 이용여부 점검

3. LMS 점검 결과 확인

- 공단 원격훈련모니터링 홈페이지(emon.hrdkorea.or.kr) 공지사항 확인
 - 일자 : 2018. 4. 27 예정
 - 1일 1회 휴대폰 본인인증 기능 구현이 확인된 훈련기관에 한하여 과정인정 승인 가능

4. 이후 과정인정 신청기관의 휴대폰 인증 LMS 구현 확인

- 4월 일괄 점검 시 확인받지 않았으나, 이후 과정인정이 필요한 기관은 1번의 신청방법에 따라 별도 연락하여 점검 실시
- 공단은 해당 지부지사에게 점검 결과를 통보하여 과정인정에 반영

5. 원격훈련기관별 휴대폰 본인인증 기능구현 현황 관리

- 공단은 원격훈련기관의 휴대폰 본인인증 구현 현황을 관리
- 지부지사 과정인정에 반영되도록 지속 업데이트 결과 제공
- 공단은 지부지사 과정인정 업무 오류 발생여부 모니터링

IV

FAQ

1. 지금은 과정인정 받을 게 없는데, 나중에 과정인정 받을 때 1일 1회 휴대폰 본인인증 기능을 구축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규정상 '18. 4. 30. 이후 인정 신청하는 과정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나중에 과정인정 받을 때 1일 1회 휴대폰 본인인증 기능을 구축하셔도 됩니다.

2. 휴대폰 본인인증 시점을 차시의 학습을 시작할 때 적용해도 되나요?

본인인증 시점은 훈련기관의 비용 부담 및 훈련생의 인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실제 학습 또는 평가에 접속할 때 인증하도록(단순한 로그인 제외)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또한 훈련기관 사정에 따라 로그인, 강의실 입장 등 훈련생이 1일 1회 휴대폰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구축되어 있으면 됩니다.

3. 4.30일 이후에 인정받은 과정을 2개 이상 동시에 학습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과정별로 각각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규정상 1일 1회 휴대폰 본인인증을 하도록 되어 있어, 훈련생은 일자를 기준으로 1일 1회 본인인증 하면 됩니다.

4. 4.30일 이전에 인정받은 과정과 4.30일 이후에 인정받은 과정을 2개 동시에 학습하는 경우, 본인인증을 해야 하나요?

로그인 시, 강의실 입장 시와 같이 전체 훈련과정에 일괄 적용한 경우에는 이전에 인정받은 과정이 일부 섞여 있더라도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훈련과정별로 본인인증 기능을 적용한 경우에는 4.30일 이후 인정받은 과정을 학습할 때 본인인증 하면 됩니다.

5. 휴대폰 외 다른 수단도 가능한가요?

휴대폰 외 아이핀,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인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메일 인증, 신용카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6. 휴대폰 본인인증도 안 되고, 아이핀 발급받는 것도 어려운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훈련생 불편이 예상되더라도 고용보험 환급과정 운영의 본인인증 강화 방침에 따라 아이핀*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은 필수이오니, 사전에 고객사와 훈련위탁계약 체결시 명확히 설명하여 투명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아이핀은 '18년 6월까지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신규 발급 또는 민간 아이핀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발급(휴대폰인증 등 본인인증시 온라인 발급가능)

7. 훈련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휴대폰 본인인증 시스템을 사용해도 되나요?

소속근로자 대상으로 자체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훈련기관에서 자체 구축한 휴대폰 본인인증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가 인증해주는 방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